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995
----------	------

2024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2일, 허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9월 2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허훈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폐의약품 처리를 위해 수거함 설치 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민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폐의약품 처리와 관련된 정보의 대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가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시민들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시가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이 안전하고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로,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야 함.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는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 함유 폐기물, 천연 방사성 제품 생활폐기물 및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등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이 중 폐의약품, 폐형광등, 폐배터리 및 폐페인트 등을 대상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

-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하나인 폐의약품은 2022년까지는 서울시 약사회에서 수거의 한 축을 담당해 왔으나, 낮은 수거율과 장기간 보관에 따른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서울시는 폐의약품 수거 거점을 주민센터, 보건소 등으로 변경하였음.

또한, 2023년부터는 우정사업본부 등과 폐의약품 수거 협약체결을 통해 우체통 등을 활용하여 폐의약품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임.

- 따라서 안 제7조제4항과 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실효성 있는 수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가 자치구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자치구 이행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상 시장의 의무인 ‘폐기물 처리 사업 등의 지원 및 조정’ 역할을 충실하게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이에 공감하는 바임.

다만,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도 일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원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7조제3항에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 의견
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들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도록 자치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게 해당 자치구에서 제작·배포한 홍보 및 교육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u>구청장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고,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 일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원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7조제3항에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995
----------	------------

제안년월일: 2024년 9월 2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현행 조례 제7조제3항에 일부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바, 원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7조제3항에 동 개정 사항을 반영함.

2. 주요 골자

- 시장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지침서를 작성·배포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제3항).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 중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를 “구청장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기준”으로,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를 “수 있고,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로 “제출을 요구 하거나”를 “제출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 <u>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p>	<p>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시장은 <u>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p> <p>④ 시장은 <u>시민들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하도록 자치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에게 해당 자치구에서 제작·배포한 홍보 및 교육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u>구청장의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기준 ----- 수 있고,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 제출과 -----.</u></p> <p><삭 제></p>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를 “구청장의 생활계 유해 폐기물 처리 기준”으로,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를 “수 있고 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로 “제출을 요구하거나”를 “제출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 ② (생 략)</p> <p>③ 시장은 <u>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p>	<p>제7조(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구청장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기준 ----- 수 있고</u> <u>관련 지침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게 -----</u> <u>제출과 -----.</u></p>